

|       |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|
| 의안번호  | 2218177   |
| 의 퇴 인 | 송재봉의원     |
| 회 답 일 | 2026.6.5. |
| 추계번호  | 26C2011   |

# 화장품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## 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, 실태조사를 실시하며, 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5억 5,400만원, 2028년 5,400만원, 2030년 4억 5,400만원 등 5년간 총 11억 7,000만원(연평균 2억 3,4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7 | 2028 | 2029 | 2030 | 2031 | 합 계   | 연평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|-----|
| 화장품산업 진흥 종합계획(안 제4조)        | 150  | -    | -    | -    | -    | 150   | 30  |
| 시행계획(안 제5조)                 | -    | 50   | 50   | 50   | 50   | 200   | 40  |
|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·관리<br>(안 제6조) | 400  | -    | -    | 400  | -    | 800   | 160 |
| 화장품산업진흥위원회<br>(안 제7조)       | 4    | 4    | 4    | 4    | 4    | 20    | 4   |
|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| 554  | 54   | 54   | 454  | 54   | 1,170 | 234 |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## II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  | 안 제4조(화장품산업 진흥 종합계획) | ○ (제1항) 보건복지부장관은 화장품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화장품산업 진흥 종합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)을 화장품산업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| 의무규정 |
| 2  | 안 제5조(시행계획)          | ○ (제1항)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화장품산업 진흥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3  | 안 제6조(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·관리)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제1항) 보건복지부장관은 화장품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화장품산업의 구조, 인력, 기술수준, 수출입 등 화장품산업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</li> <li>○ (제2항) 보건복지부장관은 화장품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| 4  | 안 제7조(화장품산업진흥위원회)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제1항) 보건복지부장관은 화장품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조정·협의하기 위하여 화장품산업진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| 5  | 안 제8조(전문인력 양성)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제1항) 정부는 화장품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산학연 연계 교육·훈련·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.</li> <li>○ (제2항)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학, 연구기관, 기업 등과 협력하여 직무별 전문교육과정을 개발·보급할 수 있다.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| 6  | 안 제9조(기술개발 및 디지털 혁신 지원)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제1항) 정부는 화장품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구·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</li> <li>○ (제2항) 정부는 임상·데이터 기반 연구, 인공지능 및 디지털기술의 융합을 통한 화장품산업의 혁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</li> <li>○ (제3항) 정부는 중소기업 및 인디 브랜드의 화장품의 기술 및 브랜드 개발, 인증, 마케팅 및 수출 등에 대한 자금지원과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.</li> </ul> | 재량규정 |
| 7  | 안 제10조(지속가능성 대응 및 친환경 인프라 조성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제1항) 국가는 친환경 원료, 포장재, 탄소저감 등 환경친화적인 기술개발을 지원하여야 한다.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| 8  | 안 제11조(통합인증 시험·표준관리체계의 구축)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정부는 해외국가의 화장품 관련 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통합 인증·시험·표준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| 9  | 안 제12조(공공 인증지원 플랫폼의 운영)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보건복지부장관은 해외 제출자료의 상호인정 및 인증 효율화를 위하여 공공 인증지원 플랫폼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| 10 | 안 제13조(인·허가 절차의 효율화)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정부는 화장품의 인허가 절차의 신속화 및 효율화를 위하여 전자심사(e-Submission) 제도를 도입·운영할 수 있다.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1 | 안 제14조(국제협력 및 전자상거래 지원)               | ○ (제1항) 정부는 국제공동연구, 기술표준화, 해외거점 센터 구축 등 화장품산업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(제2항) 정부는 해외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온라인 유통, 결제, 소비자 보호에 관한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(제3항) 정부는 국내 화장품 브랜드의 상표권, 디자인, 포장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주요 수출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,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사전예방·공동대응·분쟁조정 등의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. | 의무규정 |
| 12 | 안 제15조(화장품산업 클러스터의 지정)                | ○ (제1항) 보건복지부장관은 화장품산업의 연구·개발, 생산, 유통 및 수출 지원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화장품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| 13 | 안 제16조(산학연관 협력 및 공동인프라 조성)            | ○ (제1항) 국가는 클러스터 내 산학연 협업을 촉진하고, 시험·인증·임상·품질관리 등 공동 인프라를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(제2항) 정부는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중소·인디 브랜드, OEM·ODM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| 14 | 안 제17조(글로벌 네트워크 구축)                   | ○ 정부는 해외거점센터 및 홍보관 설치 등 화장품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| 15 | 안 제18조(혁신형 화장품기업의 인증)                 | ○ (제1항)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술개발, 수출, 환경·사회·지배구조 책임투명경영, 사회적 가치 창출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화장품기업을 혁신형 화장품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| 16 | 안 제19조(인증기업에 대한 지원)                   | ○ 정부는 인증기업에 대하여 세제, 금융, 연구·개발, 판로개척, 수출지원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| 17 | 안 제20조(환경·사회·지배구조 책임투명경영 및 지속가능경영 촉진) | ○ (제1항) 국가는 화장품산업의 환경·사회·지배구조 책임투명경영 촉진을 위하여 친환경 포장, 탄소저감, 윤리적 생산, 공급망 투명성 및 인권경영 등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
### 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#### 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추계여부 | 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안 제4조(화장품산업 진흥 종합계획)                  | ○    | ○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  | 안 제5조(시행계획)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  | 안 제6조(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·관리)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  | 안 제7조(화장품산업진흥위원회)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  | 안 제8조(전문인력 양성)                        | ×    | ○ 관련 사업 실시 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6  | 안 제9조(기술개발 및 디지털 혁신 지원)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7  | 안 제10조(지속가능성 대응 및 친환경 인프라 조성)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8  | 안 제11조(통합인증시험표준관리체계의 구축)              | ×    | 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9  | 안 제12조(공공 인증지원 플랫폼의 운영)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0 | 안 제13조(인·허가 절차의 효율화)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1 | 안 제14조(국제협력 및 전자상거래 지원)               | ×    | ○ 관련 사업 실시 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2 | 안 제15조(화장품산업 클러스터의 지정)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3 | 안 제16조(산학연관 협력 및 공동인프라 조성)            | ×    | 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4 | 안 제17조(글로벌 네트워크 구축)                   | ×    | ○ 관련 사업 실시 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5 | 안 제18조(혁신형 화장품기업의 인증)                 | ×    | ○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<br>- 현시점에 혁신형 화장품 기업의 인증을 신청하는 기업 수를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어려우므로 추계가 곤란함 <sup>1)</sup> |
| 16 | 안 제19조(인증기업에 대한 지원)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7 | 안 제20조(환경·사회·지배구조 책임투명경영 및 지속가능경영 촉진)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1) 보건복지부 유사사례로 '25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사업 예산은 인증심사 1억 600만원, 인증요건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분석 7,200만원, 혁신형 제약기업 홍보 및 포상 9,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, 화장품 산업의 업종은 제약사업 보다 세분화되어 있고 대상 기업군이 광범위하므로 업종별 특성에 최적화된 심사 지표 개발 및 다각적 혁신성 평가가 필수적임

## 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현행 「화장품법」에 따라 제정안 일부 조항 관련 사업이 시행 중이고, 제정안에 따라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 상황에서 확대될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을 알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
- 제정안 재정수반요인과 관련된 사업의 예산현황은 다음과 같음

[표 2] 현행 사업과 제정안 재정수반요인 비교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업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'26년 예산<br>(백만원) | 재정수반요인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보건복지부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바이오헬스산업 전문인력<br>양성         | 화장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63              | · 안 제8조  |
| 혁신성장 피부건강 기반<br>기술 개발(R&D) | 혁신성장 피부건강 기반기술 개발(R&D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7,535            | · 안 제9조  |
| 화장품산업 경쟁력 강화               | 오송 글로벌 K-뷰티 아카데미 설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,851            | · 안 제8조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피부 유전체 분석센터 구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,120            | · 안 제9조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남원 천연물 화장품 시험검사 임상센터 구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,192            |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충북 글로벌 클린화장품 산업화 기반 구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,820            | · 안 제10조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화장품 종합지원센터 운영 (수출 국가 다변화 전<br>략 지원, 화장품안전관리 지원체계 구축 등) | 4,576            | · 안 제14조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미국 OTC 제조소 등록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,300            |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AI활용 수출 통합 정보 제공 및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,000            |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온라인 유통 플랫폼 디지털 마케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,500            |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내 K-뷰티 체험 홍보관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,179            | · 안 제17조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해외 물류 기지 구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9,000            |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해외 판매장 및 팝업부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,400            |          |
| 중소기업벤처부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마케팅지원사업                    | K-뷰티 클러스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,000            | · 안 제15조 |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이 외에도 현시점에서 사업 등이 구체화 되지 않아 추가재정소요 산출이 어려운 경우(안 제11조·제12조·제13조·제16조)를 제외하고, 본 추계서는 안 제4조·제5조·제6조·제7조의 재정수반요인을 대상으로 산출
- 보건복지부의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

-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### 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#### □ 화장품산업 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(안 제4조·제5조)

-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화장품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,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
  - － (종합계획) 보건복지부의 “제3차 제약산업 종합계획(2023~2027)”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5,000만원을 준용함
  - － (시행계획)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라 종합계획 수립 후 매년 연구용역 및 검토 회의비 5,000만원이 소요되며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- 추계 결과, 2027년부터 2031년 사이 추가재정소요는 3억 5,000만원으로 추계

[표 3]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| 구 분                  | 2027 | 2028 | 2029 | 2030 | 2031 | 합 계 | 연평균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|-----|
| 화장품산업 진흥 종합계획(안 제4조) | 150  | —    | —    | —    | —    | 150 | 30  |
| 시행계획(안 제5조)          | —    | 50   | 50   | 50   | 50   | 200 | 40  |
| 합계                   | 150  | 50   | 50   | 50   | 50   | 350 | 70  |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#### □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·관리(안 제6조)

-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기산업 실태조사의 모집단 규모에 따른 연구용역비를 고려하여, 3년마다 4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<sup>2)</sup>
  - － 제정안은 실태조사 시행 주기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, 유사사례인 의료기기산업 실태조사가 3년마다 실시되는 점을 준용하여 3년 주기를 가정함
- 추계결과, 추계기간 동안 추가재정소요는 8억원으로 추계

2) ‘의료기기산업 실태조사’는 ‘24년 의료기기산업 사업체 모집단 8,000개소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1억원의 연구용역비를 편성하였으며, ‘24년 기준, 화장품 산업 전반(원료, 제조, 책임판매, 유통 등)을 포괄할 경우 전체 사업체는 약 32,000개소임

[표 4]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·관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7 | 2028 | 2029 | 2030 | 2031 | 합 계 | 연평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|-----|
|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·관리<br>(안 제6조) | 400  | -    | -    | 400  | -    | 800 | 160 |

#### □ 화장품산업진흥위원회(안 제7조)

- 제정안에 따라 화장품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위원회에 위촉된 민간위원에게 지급하는 참석 수당으로 하며, 그 외의 운영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
  - 위원회 정원과 회의 횟수 등은 유사사례인 의료기기산업육성·지원위원회<sup>3)</sup>를 준용함
- 추가재정소요는 위원회 민간위원 수에 참석 수당 단가 및 연간 회의 횟수를 곱하여 산출
  - (위원 수) 의료기기산업육성·지원위원회 사례를 준용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최대 정수 15인 중 수당 지급 대상인 민간위원은 10인을 위촉하는 것으로 가정
  - (회의 횟수) 의료기기산업육성·지원위원회 사례를 준용하여 연 2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
  - (회의수당 단가) 기획예산처의 「202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」<sup>4)</sup>을 준용하여 20만원으로 하고, 해당 금액이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- 추계 결과, 추계기간 동안 2,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

[표 4] 화장품산업 육성·지원 위원회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7~2031년

|                    | 2027 | 2028 | 2029 | 2030 | 2031 | 합 계 | 연평균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|-----|
| 민간위원 수(명, A)       | 10   | 10   | 10   | 10   | 10   | -   | -   |
| 회의 횟수(회, B)        | 2    | 2    | 2    | 2    | 2    | -   | -   |
| 회의수당 단가(백만원, C)    | 0.2  | 0.2  | 0.2  | 0.2  | 0.2  | -   | -   |
| 추가재정소요(백만원, A×B×C) | 4    | 4    | 4    | 4    | 4    | 20  | 4   |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3) '24년 11월에 구성된 3기 위원 정원 15명 중 5명이 공무원, 10명이 민간위원이었으며, '25년 중 본회의 2회, 분과위 2회 개최

4) 「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」(기획예산처) -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200,000원내(서면심사 150,000원내)에서 지급하되,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100,000원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,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·식비·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(220목) 또는 일반수용비(210-01목)로 추가 지급할 수 있다.

## IV. 부대의견

-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-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## V. 작성자

### □ 성명

|         |     |          |
|---------|-----|----------|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(직무대리) |
| 사회비용추계과 | 이소임 | 이제정      |

### □ 대표연락처

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성명  | 전화번호         | 이메일 주소                 |
| 이소임 | 02-6788-4742 | soimlee@assembly.go.kr |